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 >

■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6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3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안장 대상에서 제외	7
2. 국립묘지 안장 제외 시 강제 이장 근거 마련 등	10
3. 법 적용 시점의 소급 관련	11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 : 2024. 6. 12.

다. 회부일 :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

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6. (현행 제5호와 같음)
5. (생략)	

⑥・⑦ (생 략)

제7조(이장) ①・② (생 략)

<신 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
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이장)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제5조제5항제5호에 대하여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족에게 그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5항제5호・제6호-----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
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
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
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할 것

③ · ④ (생 략)

제16조(안장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1. · 2.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5조제5항제6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장비용)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
에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
용. 다만, 유족이 없는 경우에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u>제5조제5항제5호</u>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④ (생략)	<u>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u>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조제5항제6호</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대상자 제외 및 이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5항 제5호 신설)

□ 현행법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및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므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 한 사람은 1,006명으로, 그 중 12명²⁾이 국립묘지(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음.

1)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나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2)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12명은 일본군 장교 출신 11인 및 대학교수 1인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및 제13호(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경우임[참고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현황 참조(12쪽)].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

(2024. 6. 기준, 단위: 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총 확정 인원	국립묘지 안장자		국립묘지 미안장자
	국가유공자	기타사유	
1,006	8	4	994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및 존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국립묘지의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점뿐 아니라, 그러한 희생·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행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국민 및 후손들에게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법」의 안장 대상자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에 내포하는 반국가성, 도덕적 비난 가능성 등이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점에서 과도한 입법이라 보기 어려움.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다른 공적이 있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 이는 별개의 공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 법적 지위를 그대로 둔 채 개정안에서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을 이유로 안장을 배제하는 방식인데,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지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 안장자가 가진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51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법 제5조제5항제5호는 2024년 2월 27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8일 시행예정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시행예정인 법률

(법률 제20074호 국가묘지법 일부개정법률)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이 아닌 국가수호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공적 (무공수훈자, 장성급 장교 등)으로 국립묘지에 안장 자격이 있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를 이유로 안장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들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희생과 공헌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립묘지 안장 제외 시 강제 이장 근거 마련 등(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은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이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³⁾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안장 대상 제외 결정 시 강제 이장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족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장하는 경우와 같이 이장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되,⁴⁾ 유족이 없는

3) 「국립묘지법」 제7조(이장) ① (생략)

②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4) 「국립묘지법」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경우에만 국가의 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안장 대상 제외 결정 시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분묘는 사자(死者)에 대하여 유족이 제사, 예배, 기념 등을 통하여 인륜, 도덕적 및 종교적 감정을 향수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강제이장의 경우 그 유족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도덕적·종교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법 적용 시점의 소급 관련(부칙 제2조)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안장대상자 제외 및 이장규정이 개정 전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제2조(안장대상자 제외 및 이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생 략)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개정안은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⁵⁾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에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제외는 법적 안정성 및 해당 대상자의 신뢰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이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라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⁶⁾

□ 국가보훈부는, 이미 안장된 사람에 대한 강제 이장은 법률불소급 원칙 및 유족의 신뢰보호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141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

6)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건에서 친일재산은 당시 법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득된 재산이므로 사후에 이를 귀속시키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141 결정).

문 의 처
02)6788-5110

□ 친일반민족행위자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설치근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3. 3. 22. 공포)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2005. 5. 31. 설립
- 활동기간 : 2005. 5. 31. ~ 2009. 11. 30.(4년 6월)
- 업무내용
 -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조사활동을 통해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 일제강점기를 구분하여 조사
 - 1기 : 1904년 러·일전쟁 ~ 1919년 3·1운동
 - * 이완용 등 106명 공개(2006. 12. 6.)
 - 2기 : 1919년 3·1운동 ~ 1937년 중·일전쟁
 - * 민영휘, 송병준 등 195명 공개(2007. 12. 6.)
 - 3기 : 1937년 중·일전쟁 ~ 1945년 해방
 - * 김성수, 방응모, 김활란, 백선엽 등 704명 공개(2009. 11. 27.)

□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행위자 현황

구분		성명	안장자격	안장장소
국가유공자	1	김O준	전몰군경	서울위패
	2	김O일	무공, 장성급	서울
	3	김O범	무공, 장성급	대전
	4	송O하	무공, 장성급	대전
	5	신O균	무공, 장성급	서울
	6	신O영	무공, 장성급	서울
	7	신O준	무공, 장성급	대전
	8	백O엽	무공, 장성급	대전
기타	9	백O석	장성급 장교	대전
	10	이O준	장성급 장교	서울
	11	이O찬	장성급 장교	서울
	12	백O준	국가사회공헌자	서울

참고2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요 및 영예성 훼손 관련 심의 현황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보훈부 차관(국립묘지법 제10조 제5항)
 - 민·관 위원 20명 이내(국립묘지법 제10조 제5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 법무부 법무심의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행정안전부 의정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등
- 업무 내용(심의 사항)
 - 의사상자, 위험직무 순직·공상(1~3급)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 국적상실자 안장 대상 해당 여부, 생전(生前) 심의요청자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

□ 최근 5년간 영예성 관련(법 제5조제5항제5호) 심의 사례

(단위 : 건)

구 분	계	‘19년 (8~12월)	‘20년	‘21년	‘22년	‘23년	2024년 (1~7월)
심의 건수	12,466	773	2,955	1,963	3,021	2,352	1,402
안장 대상	8,889	487	1,932	1,363	2,270	1,724	1,113
안장 비대상	3,577	286	1,023	600	751	628	289

* 심의 기준(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4조제3항):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